

2015. 8.

바른 감사 바른 시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감사결과



감사담당관실

<http://www.jeonju.go.kr>

전주영화종합촬영소 감사결과

감사개요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5. 6. 22. ~ 6. 25. (4일간)
- 감사범위 : '12. 8월 ~ '15. 5월말까지 처리한 업무전반
- 감사반 : 감사담당관 외 1개반 3명

□ 감사중점사항

- 협약서 이행실태 및 운영 전반
- 운영비 등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실태
- 시설장비 사용료 등 수입금 분야 등

□ 감사결과 : 8건 지적

구 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계획(천원)				신 분 상 심의결과(명)		
	계	시정	주의	계	감액	추징	기타	계	훈계	징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8	◇	○	△△△		△△	△△△			

주요 지적 사항

1. 시설 및 장비 대여료 징수에 관한 사항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제20조(대여료)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대여료는 대여가격표를 적용하며, 제2항에 의거 시설 및 장비신청인은 대여 계약 체결 후 계약 선수금으로 대여료의 50%를 현금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전까지 남은 50%를 촬영소가 지정하는 은행에 현금 납부하여야 한다.
- 그런데,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는 ■■■■■■에 대하여 ' 00. 0. 0일부터 00. 0.00일까지 00일간 장비 Red One Set를 대여해주면서 장비사용료 0,000천원을 장비사용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테라픽스 외 0건 0,000천원에 대하여는 장비 및 시설을 대여 계약서에 따라 대여해 주었으나, 계약 선수금을 징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비 및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사용료를 현금납부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사용기간이 완료된 후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시설 및 장비 사용료 총 0건 00,000천원을 지연 징수한 사실이 있음.

2.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는 재무회계규칙 제74조(자금운용)에 따라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으며,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 운영하는 여유자금을 보면 자체수입금에서 201◇년도부터 현재까지 매월 평균 0억원정도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운영비에서는 201◇년도부터 현재까지 0억원부터 0억원 정도의 자금이, 시설감가상각비 예치금은 201◇.00.00일 기준 0천만원의 자금이 여유자금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기성 예금상품 등의 상품에 예치하여 높은 이자수입을 창출할 수 있었음에도, 전북은행 보통예금통장에 예치하여 입출금 관리만 하는 등 자금운용에 소홀함이 있었음.

3. 퇴직 적립금에 관한 사항

-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 보수규정 제12조(퇴직금의 산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하며,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3조(퇴직금의 적립)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사)전주영상위원회에서 부담하고 있다.
- 그런데, (사)전주영상위원회에서는 촬영장비 부분에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201◇. 00. 00일 ○●○와 201◇. 0. 0일부터 2013. 12. 31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는 201◇. 0.00일자로 퇴사하였음.
- 따라서 (사)전주영상위원회 자체수입금에서 ○●○ 퇴직금으로 부담한 343,763원(이자 431원)은 규정에 따라 근속년수가 1년 미만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2013. 4. 30. ○●○ 퇴사 후 적립 퇴직금을 반환하여 자체수입금으로 세입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201◇. 0. 00. 감사일 현재까지 퇴직금 적립통장에 보관하고 있었음.

4. 지연배상금 부과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공사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는 201◇. 0. 0일 J1 스튜디오 옥외 하천 정비공사를 201◇. 0. 0. ~ 201◇. 0. 00(0일)로 계약을 (주)영서종합건설과 체결하였는데, 공사업체인 (주)영서종합건설에서 당초 계약일보다 00일이 지난 201◇. 0. 00일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같은날 공사 감독관이 준공검사조서를 완료 하였음에도 지연배상금 000,000원(계약금액×1/1000×지연일수 00일)을 공사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

나 청구금액 전체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5. 가산금 납부에 관한 사항

- 가산금은 공공요금 등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할 행정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할증된 금액으로, 기간 내에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제도이다.
- 그런데,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는 상하수도 요금과 관련하여 상하수도 납부처(전주시 맑은물사업소)로부터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납부기한이 2012년 9월 30일인데 10월 16일에 납부하여 00,000원 가산금이 발생 하였고, 납부기한이 2013년 1월 31일인 상하수도요금을 기한이 경과한 2월 13일에 납부하여 00,000원의 가산금이 발생하여 총00,000원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있음.

6.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와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0분의 10)를 원천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런데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는 201◇년 0월에 회계 엑셀프로그램 제작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 00,000원, 지방소득세 0,000원)를 하지 않았고, 201◇년 00월에 제■회 전주시나리오 공모전-시놉시스 번역비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 00,000원, 주민세 0,000원)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7.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예산편성운영기준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2항에 의하면

세출 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 분류 내용은 별표12와 같다

- 그런데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는 201█년 0월 00일 ~ 00일(0일간)까지 운영위원장 외 0명이 제00회 ◆◆국제영화제 참석 및 ■■■ 영화시장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 출장시, 전주를 알리기 위한 선물로 201◇년 0월 00일에 전주 전통주 000,000원 전주한지특산품 000,000원 총000,000원으로 업무추진비가 아닌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구입한 사실이 있음.

8. 지역개발공채 및 수입인지 관한 사항

-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는 201◇. 00. 00일 ~ 201◇. 00. 00일까지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을 계약하면서 아이비에스엔 외 15개 업체로부터 0,000,000원의 지역개발공채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 또한 201◇. 00.00일 (주)■■■■■■■■과 계약한 경비용역과 (주)●●●●●와 계약한 청소용역에 대하여 인지를 각각 0만원, 0만원을 미징구 하였으며, 201◇. 1. 5일 (유)■■■■과 계약한 청소용역에 대하여 0만원을 미징구, 201◇. 1. 7일에 (주)■■■■■■■■과 계약한 경비용역에 대하여 0만원을 미징구한 사실이 있음.

IV 우수 사례

1. 영화영상 인력양성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

가. 영화세트제작마스터클래스

○ 사업목적

- 영화콘텐츠를 제작 할 수 있는 인력, 기술 등 기초인프라의 형성
- 영화기술 활용으로 영화콘텐츠 발굴 가능성과 지역영화 제작시장 활성화 유도

○ 사업 실적

(단위/천원)

구분	2012	2013	2014
교육기간	7.23 ~8.17(20일)	9.23 ~10.17(15일)	7.7 ~7.25(15일)
수료생	15명	14명	14명
사업비	21,000	24,000	22,000
취업	4명	4명	2명

나 . 무술감독액션연기자마스터클래스

○ 사업목적

- 영화 촬영 현장의 특수 분야인 무술액션연출 분야 교육을 통한 지역 영화인력의 창의성 제고
- 기존 인력양성교육 분야와 차별되는 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춘 영화 예비인력을 배출하여 일자리 매칭 기회 제공

○ 교육기간 : 2014. 07. 30(수) ~ 2014. 07. 31(목) / 총 2일

○ 교육인원 : 24명

○ 수료인원 : 15명

다 . 전주 청소년 영화연기 워크숍

○ 사업목적

- 연기자의 꿈을 가진 전주지역 청소년들에게 연기 체험학습을 통하여 소질과 적성 개발 유도
- 전주지역에서 영화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지역 애향심 고취

○ 교육기간 : 2014. 11. 22(토), 2014. 11. 24(월) / 총 2일

○ 접수인원 : 14명

○ 참가인원 : 14명

2. 시민투어를 통한 영상문화 환원사업

○ 사업목적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영화문화체험 행사 기틀마련
- 영화제작현장 견학과 영화문화 볼거리 제공을 통한 촬영소 홍보

○ 사업실적

연도	일자	참여기관	참여인원
2014년	06. 14	• 전주시 드림스타트 추천 (솔빛중학교, 완산중학교, 양지중학교)	120명
2013년	04. 19	• 전주시 드림스타트 추천	100명
	11. 02	• 삼천지역나눔센터 외 9곳	100명
2012년	06. 23	• 전주영상미디어고등학교	100명
	12. 15	• 지역문화소외계층	100명
	12. 21	• 전주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100명